

3. 外換自由化的擴大

- (背景)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연내 OECD 가입 및 무역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짐
- (基本方向) OECD 가입을 위한 기반 마련, 외화 유출입 속도의 조절, 단기 외화자본의 급속한 유입 제한 등을 기본방향으로 함
- (主要內容) 기업과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외환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 및 대폭 완화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 감시기능을 강화함
- (展望) 해외투자 대폭 허용, 상업차관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후속조치가 올해중 실시될 전망
- (影響 및 課題)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계획보다 급진된 조치로 국내 외환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제도보완,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임

연내 OECD 가입
과 무역수지 방어
를 겨냥

- (背景) 정부의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은 연내 OECD 가입과 무역수지 방어를 겨냥해 이루어짐
 - 정부는 OECD 가입이 임박해지면서 작년말 앞당겨 시행키로 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해 OECD 가입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자 함
 - 한편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절하해야 하는 입장이나 자본수지 흑자로 원화가 절상압력을 받고 있어 외화 유출을 다소 확대시킬 필요성 대두
- < 외환 수급 동향 >

(백만 달러)

	93	94	95	1/4	2/4	3/4	4/4
경상수지	-1,648	-1,531	-11,869	-3,349	-3,060	-3,310	-2,150
자본수지	9,369	7,926	14,104	2,341	2,800	5,322	3,642

자료 : 한국은행

- (基本方向) OECD 가입의 걸림돌 조기 제거,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화 유출입 속도 조절, 거시 경제 여건에 악영향을 주는 단기 외자 유입

OCED가입 기반
마련, 외화 유출
입 속도 조절,
단기 외자의 급
속한 유입 제한

- 제한 등이 기본 방향임
- OECD 가입 결정을 가름할 7월의 자본시장이동위원회 및 국제투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OECD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조기에 제거함
-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초기에 자유화하고 자본유입과 관련된 것은 단계적 자유화를 통해 외화 유출입 속도를 조절함
- 단기 외국자본 유입으로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는 모두 제외함
- 일반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허용,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허용,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수출선수금 영수 한도 확대 등은 추후 검토키로 함

기업과 개인의
정상적 경제활동
과 관련된 규제
는 철폐 및 완화

- (主要內容) 기업과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외환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 및 대폭 완화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정은행 사후관리제도³⁾ 개선 및 업무의 전산화 추진
 - 해외이주비 확대
 - 원화의 국제화 추진
 - 기업의 해외활동폭 확대
 -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을 이용한 지정거래은행 업무 전산화 추진
 - 국내외화거래 규제완화
 - 환전상 설치 자유화
 - 해외예금한도 확대

해외투자 개선
책, 상업차관 확
대, 연지급 수입
기간 연장,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이 조만
간 시행

- (展望)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주요 사안들을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海外投資 改善) 부동산 공급·임대, 골프장 임대업 등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 완화 및 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 대폭 허용(96년 6월 1일부터 전면 자유화)
 - (商業借款 擴大) 현재 중소기업 시설재와 사회간접

3) 지정은행제도 : 반복적 대외지급시 이중지급 방지 또는 특정거래에 대한 지급·영수 상황 관리 필요시 1개 외국환은행을 지정·거래토록 하는 제도

자본용 1종 시설재에만 허용되는 상업차관을 3/4분기에 사회간접자본용 2종 시설재 등으로 확대 추진

- (其他) 연지급 수입기간(현재 기업·지역·용도에 따라 60일~180일) 연장 및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현재 연간 수출실적의 10%) 확대 검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자본수지 흑자 완화에 기여

○ (影響) 이번 조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자본수지 흑자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투기성 핫머니의 유출입 증대 및 급속한 국내 자본의 유출 유발 등 부작용도 예상됨

- 저리의 외자사용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 기업의 해외 진출 자유화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금융의 국제화 촉진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 투기성 또는 도피성 핫머니의 유출입 가능성 증대
- 자본유출 확대로 자본수지 흑자 완화 기대
 - 계획보다 급진적인 조치로 국내 외환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조속한 규제완화, 간접적 통화 관리

○ (課題)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이를 위한 간접통화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함

- 정책금융 등에 대한 재정기능을 강화하여 개방경제에 걸맞는 간접적 통화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함
- 자본 유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시급
- 기업의 실물 경제 활동에 관련되는 외환규제가 당초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음
 - 대기업에 대한 20% 자기자본조달비율,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등 기업의 국외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조속한 완화 조치 절실
 -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등에 대한 재정기능을 강화하여, 개방경제체제에 걸맞는 간접적인 통화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함

(김 범 구)

< 外換制度 改革 措置 内譯 >

○ 經常 去來

제목	현행	조치내역
지급절차	·인증제	·신고제
실수요증명 면제거래	·한도: 전당 5천 달러 ·국세청통보: 연간 1만 달러 초과	·한도 확대 ·국세청통보: 연간 2만 달러 초과
해외사무소 경비 지급	·기본경비 : 실소요 경비 ·유지활동비 : 월 2만 달러	·자유화 ·일정금액 초과시 국세청 통보
해외여행경비	·기본경비 월 1만 달러	·현행 유지
해외신용카드 사용	·여행경비 -개인 월 5천 달러 초과, 법인 분 기 10만 달러 초과시 사후관리 ·기타경비-전당 5천 달러	·현행 유지
외환매입규모 (개인)	·연간 1만 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 이내
해외이주비	·세대주 20만 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 달러 ※4인가족 기준 : 50만 달러	·세대주 40만 달러 ·세대원 1인당 20만 달러 ※4인가족 기준 : 100만 달러 ·한도 초과시 한은 허가
연지급 수입기간	·기업 1지역 1용도에 따라 60일~180일	·별도 조치 (기간 연장)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중소기업 : 자유화 ·대기업: 연간 수출실적의 10%	·별도 조치 (한도 확대)
환전상	·관광사업자	·자유화
화교등 5년이상 거주 외국인	·외환매각범위내 매입	·내국인과 동등수준 송금 가능

○ 資本 去來

제목	현행	조치내역
해외직접투자	·한도: 5천만 달러 초과시 한은 허가 ·제한: 부동산 관련 3개 업종	·자유화(96.6)
내국인의 해외자산운용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자유화(96.4)
해외예금	·기관투자가: 1억 달러 ·법인: 연간 1백만 달러 ·개인: 연간 3만 달러	·한도 확대 -기관투자가: 자유화 -법인: 연간 3백만 달러 -개인: 연간 5만 달러
해외신용공여	·기관투자가: 1천만 달러 ·법인: 30만 달러	·한도 확대 -기관투자가: 자유화
해외부동산투자	·법인 및 개인의 자산운용용 투자제한	·별도 검토 (한도 확대)

국내외증권발행		
외국인의 국내증권발행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 허용(95)	·국내DR발행 허용(96.5)
내국인의 해외증권발행	·시설재 도입·해외투자 중에 한정	·CP발행 허용 (용도:원유수입자금)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국내주식투자	·종목당 18%, 1인당 4%	·한도 확대 (96.2)
국내채권투자	·중소기업 무보증전환사채만 허용	·대상 확대 (96.2)
수익증권		
해외수익증권발행	·제한적 허용	·한도 확대 (96.3)
국내수익증권발행	·불허	·별도 검토 (대상 확대)
국내수익증권매수	·불허	·대상 확대 (96.3)
금전대차보증		
상업차관	·용도·한도 제한	·별도 검토 (대상 확대)
현지금융	·용도 제한	·자유화
보증·담보	·거래대상 제한	·자유화

○ 外換 市場

제목	현행	조치내역
외국환은행 해외점포 설치	·연1회 정기인가	·수시인가제 도입
실수요 증명제도	·제출대상 -선물환:원화·외화간 1천만달러이상 -금융선물:2천만달러이상 장외거래	·제출 면제 (특기적 거래제한)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3만 달러 이하는 면제 ·해외외화보유 -수출업체:수출실적의 30% -건설업체:건설잔액의 20%	·한도 확대:5만 달러 이하 ·한도 확대 -수출업체:수출실적의 50% -건설업체:건설잔액의 30%
포지션제도	·한도 운용	·별도 검토
원의 국제화		
비거주 원화예금	·자유원계정 운용 -입출금 용도 제한 ·경상무역외거래 ·전당 30만 달러 이내 수출입	·국외점포에 자유원계정 개설 허용 ·거래대상 확대 -모든 경상거래(한도 폐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원화휴대반출입	·3백만원이내	·8백만원이내
원화대가 외화매입	·국외지점에서 3백만원 이내	·매입한도 자유화 ·외국은행 매입 허용
외화대가원화매입	·국외지점에서 3백만원 이내	·매입한도 자유화 ·외국은행 매입 허용